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9
------	-----

2012. 10. 8.
재 정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가. 제안이유

- 유통환경의 변화로 1차 농수산물 유통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식문화, 안전, 품질, 신뢰 등 2차 및 3차 산업과 융합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급식사업 확대, 국내외 도

매시장 운영 컨설팅, 식생활·문화 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공영도매 시장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익적 역할을 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조문을 변경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및 제15조).
- 임원 중 이사의 임면에 관해 당연직 이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사장이 정하도록 변경함(안 제9조 및 제15조).
- 공사의 사업 범위 중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고,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식품의 유통”, “농수산물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및 “농수산물식품에 관한 조사, 연구와 도매시장 수탁 관리” 분야를 신설함(안 제16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와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안 부칙 제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조례안의 개요

-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국내 최대 규모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공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 최근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개념이 산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단순 거래에서 확대되어 안전과 품질관리, 유통 전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공급, 포장·가공·저장을 비롯한 복합 물류 기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이하 “시”)는 공사가 단순한 농수산물 유통 원활화와 가격 안정이라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각종 농수산식품의 유통·안전·품질 관리 등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변화된 농수산물 유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공사의 설립목적을 변경하고, 기관의 명칭도 기존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변경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사는 그 목적과 명칭을 유통 환경의 변화나 시민의 수요 변화 등 여러 상황변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공사의 기능이 학교급식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의 단체급식이나 농수산물의 안전 관리 분야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조치로 판단됨.
- 시가 건립·관할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공사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시설물관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가격안정 등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추가되는 식품유통 업무에 적합한 조직·인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식품의 유통과 안전·품질 관리 등으로까지 업무의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식품유통을 담당했던 민간영역에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불필요한 간섭을 하게 되거나, 필요 이상의 경쟁상황을 조성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함.
- 이 밖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사의 명칭이 현재 정부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유사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 관련 법령에서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됨¹⁾.

다. 상임이사 임명조문의 정리(안 제9조제2항)

- 공사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장을 비롯한 3명의 상임이사와 6명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감사를 두고 있으며(참고자료 1), 상임이사는 사장을 비롯한 3명으로 모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사장이 임명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사장임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이는 당연직 상임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라. 자문위원회의 운영(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사 경영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사의 명칭변경과 관련해 자사의 명칭과 혼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

- 현재 공사의 가장 큰 현안인 현대화사업 분야를 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추가하는 조치는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설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현재 공사 내에는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시장별로 설치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운영중인 ‘시설현대화사업위원회’²⁾ 등 실질적으로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설치·운영중으로 자문위원회 설치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자문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사업범위의 확대 및 변경(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유통환경 및 도매시장 운영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공사의 사업범위를 기존보다 확대·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농수산식품분야에 대한 사업 수행근거 마련, 농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타지역 도매시장의 수탁운영 근거 마련 등을 신설하였음.
- 이 밖에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업무, 도매시장 사용료 등의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업무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있음.

2) 시설현대화사업위원회에는 4개의 위원회와 7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 및 유통, IT 분야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공사와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유통정보 제공, 농수산물 품질·안전관리 분야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변경하는 조치는 자치법규의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공사의 명칭 변경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식품분야에 대한 사업범위 확대가 시장질서 왜곡이나 유통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우려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요구됨.
- 아울러, 매년 각 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200여 차례 이상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유통인에 대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 제16조제3호에서 감독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유통인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기 상조라 판단됨(참고자료 2).

바. 종합의견

-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사의 명칭변경이나 사업범위의 확대는 새로운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할 수 있으나,
- 다만 공익적 목적에 의해 설립된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등의 조치는 본연의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와 기존의 시장환경에 대한 영향, 타 기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생략」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39
----------	--------

제안년월일 : 2012년 10월 8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을 비롯한 도매시장 내 각 유통인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사의 주요 사업 범위에 포함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공사의 주요 사업범위에 각 유통인에 대한 감독 업무를 포함함
(안 제16조제3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3호 중 “지도 및 지원” 을 “지원 및 지도감독” 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2. <생략></p> <p>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u>지도감독</u></p> <p>4. ~ 9. <생략></p>	<p>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u>지도 및 지원</u></p> <p>4. ~ 12. <생략></p>	<p>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u>지원 및 지도감독</u></p> <p>4. ~ 12.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로 하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를 “시설현대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사장의 자

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및 정관으로”를 “사장이”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4. 농수산물식품 유통구조 개선
5.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6.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식품의 유통
7. 농수산물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8. 농수산물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9.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 관리 및 컨설팅
10. 정관이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명의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u>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u>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u>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u>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u>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u>(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u>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u>(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p>
<p>제9조(이사) ① (생략)</p> <p>② <u>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④ (생략)</p>	<p>제9조(이사) ① (생략)</p> <p>② <u>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u></p> <p>③ ~ ④ (생략)</p>
<p>제15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p>	<p>제15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p>

현행	개정안
<p>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u>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u></p>	<p>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u>시설현대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 및 정관으로 정한다.</u></p>	<p>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사장이 정한다.</u></p>
<p>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u>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u></p>	<p>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u>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u></p>
<p>2. 도매시장의 <u>거래질서 유지</u></p>	<p>2. 도매시장의 <u>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u></p>
<p>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u>지도감독</u></p>	<p>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u>지원 및 지도감독</u></p>
<p>4.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p>	<p>4. 농수산물식품 유통구조 개선</p>
<p>5.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p>	<p>5.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p>
<p><u>사용료의 징수</u></p>	<p>6.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p>
<p>6.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신설〉 〈신설〉</p>	<p>6.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p>

현행	개정안
<p>7. 정관이 정하는 사업</p> <p>8.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p>	<p>식품의 유통</p> <p>7.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p> <p>8.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p> <p>9.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 관리 및 컨설팅</p> <p>10. 정관이 정하는 사업</p> <p>11.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p>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p>